#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4. 30.]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0호, 2024. 4. 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00-2652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2

부칙 <제2009-63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0-37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고시 2010.11.8.>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기업의 증권신고서 기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영제176조 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한다.

### 부칙 <제2012-3호,2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2012.1.3.>

다만, 제2-6조제8항제1호파목 및 하목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등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3호차목 내지 카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 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12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3호,2013.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칙 <제2013-21호,2013.6.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29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2013.9.17.>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25조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격 산정방법과 전환사유에 대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3-41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2013.12.4.>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6호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44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2013.12.4>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6호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4-19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4-34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6-23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16년 8월 1일

2. 제2-4조의2의 개정규정 : 2016년 6월 30일

3. 제5-5조제1항 및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 : 2016년 9월 12일

## 부칙 <제2016-30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으로, "법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영 제8조"를 "영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2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9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3조"로 한다.

⑧ 생략

### 부칙 <제2017-4호,2017.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6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매기준 예외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자료 게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새로 게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게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7-30호,2017.8.28.>

이 규정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호,2018.2.2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4호,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8호,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1호,2019.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0조제3항 및 제5항, 제3-14조, 제3-15조제3항제3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 제4호, 제5호가목, 제9호,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등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3호차목, 파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등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40호,202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호,2021.5.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3호,2021.6.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9호,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22조에 따른 최대주주등과 관련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제한 및 제5-23조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대하여 2024.12.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55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제2-6조제8항제1호아목, 제2-19조제 3항제8호, 제5-13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적용례) (증권신고서 제출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이 시행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2-12호,2022.3.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사채를 발행(추가발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3-16호,2023.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20호,2024.4.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